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호 2018. 1. 24(수)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393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394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남원시 조례 제1395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훈령

- 남원시 훈령 제385호 남원시 자랑스런 공무원상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35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121호 도로공고(변경) ----- 43
- 남원시 공고 제2018- 141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44
- 남원시 공고 제2018- 142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7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1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93 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장사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관리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수 있다.

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사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②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③ 자연장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자연장지 사용권자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골의 봉안 및 인도)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화당의 봉안함에는 부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고,자연장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

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씩 두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90일전 또는 만료일 90일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없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행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남원시 솔터길 40-36 (광치동 690-1번지)	
봉안시설	남원시 승화당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남원시 광치동 산 233-2번지 일원	
유택동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제4조 관련)

시설별	이용대상	구분		사용료(원)	
				관내	관외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관외 : 관내를 제외한 사망한 사람	사체(만15세 이상)		60,000	500,000
		사체(만15세 미만)		40,000	300,000
		사태		20,000	150,000
	○ 관내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시 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봉안시설 (남원시 승화당)	○ 관내 :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의 당시 주소가 관내 6개월 미만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구분없음		100,000	300,000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없음
		유택 동산	처리 수수료	20,000	해당없음

[별표 3]

승화당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1년 이내	50
2	3년 이내	30
3	5년 이내	10
4	5년 초과	없음

※ 자연장지 사용권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승화원·승화당·자연장·유택동산)				즉 시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자 (유골)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사망(개장) 장 소		사망(개장) 연월일		
	사망(개장) 사유		공설장사시설 (승화원·승화당· 자연장·유택동산) 번호		
	사 용 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p>「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승화원·승화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공설장사시설(승화원·승화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 허가증					
사망자 (유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공설장사시설 (승화원·승화당· 자연장·유택동산) 번호	
	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p>「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승화원·승화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1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94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를 “이런 공중이 이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을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기”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로,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제3조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중전의 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를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소독을 실시할 것”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

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을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잘”을 “잘”로 한다.

제13조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관리”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를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할 것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제17조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제5조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과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u>필요한</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u>공중화장실</u>”이라 함은 <u>공중의 이용에</u>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p>	<p>1. ----- <u>이란</u> <u>공중이 이용하도록</u> ----- ----- -----.</p>
<p>2. “<u>개방화장실</u>”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u>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u>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p>	<p>2. ----- <u>이란</u> ----- <u>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기</u> ----- ----- <u>제12조제1항에 따른</u> ----- -----.</p>
<p>3. “<u>이동화장실</u>”이라 함은 <u>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u></p>	<p>3. ----- <u>이란</u> ----- -----</p>

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등
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신 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
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
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
한다.

<신 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
용을 받는 공중화장실·개방화
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
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

----- 행사
등-----
-----.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
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
한다.

5. -----이란 -----

-----.

<삭 제>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제3조(적용의 범위) -----
----- 공중화장실·개방화
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
----- 각 호-----

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의 규정에

-----.

1. -----제2조제1호에 따른 -----
2. -----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
3. ----- 제2조제5호에 따른 -----
4. -----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
5. ----- 제2조제3호에 따른 -----
6. -----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 제2조제3호에 따른 -----
9. ----- 제2조제6호에 따른 ---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
소

<신 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체육시설

1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
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
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
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
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
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1. -----
----- 제2조제1호에 따른

12. ----- 제2조제4호에
따른 -----

13.

1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 등-----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민간위탁) ①공중화장실등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이하 “관
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연1회이상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
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
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
-----.

제6조(민간위탁) ①시장은 공중화
장실 등-----
----- 인정하는 -----
-----.

②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 -----
----- 연 1회 이상 -----
-----.

②제1항에 따라 -----

-----.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
리) 공중화장실 등-----

----- 각 호-----
-----.

- 1. -----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청소를 실시할 것

2. -----

소독을 실시할 것

3. -----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 따른 -----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 -----

-----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

제4장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 각 호-----.

- 1. -----

-- 설치할 것
- 2. -----
----- 설치할 것
- 3. -----
----- 설치할 것
- 4. -----

- 설치할 것

②-----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

- 1. -----
----- 지정할 것
- 2. -----

- 할 것
- 3. -----

-----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할 것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생략)

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 각 호 -----
-----.

<삭 제>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
----- 할 것

<삭 제>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해당-----
----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
- 필요한-----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1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95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일반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남원시 용자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 본문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당 등을”을 “수당과 여비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1퍼센트를”을 “1퍼센트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자불입”을 “이자 납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 ----- ----- ----- -----</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u>일반회계예산</u>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일반회계</u>----- -----</p>
<p>제6조(용자대상업체) 용자대상업체는 <u>남원시</u>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 7. (생략)</p>	<p>제6조(용자대상업체)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 ----- 1.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u>제9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 용자심</u></p>	<p>제10조(<u>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u>)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p>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10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3(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수당과 여비를 ----- . <단서 삭제>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
를 추가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⑥ 용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
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생략)

----- 1퍼센트
이내에서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이자 납입 -----

-----.

⑦ (현행과 같음)

남원시자랑스런공무원상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1월 24일

남원시 훈령 제 385 호

남원시자랑스런공무원상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자랑스런공무원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자랑스런공무원상운영규정”을 “남원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한다.

제2조 중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랑스런공무원상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를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공무를 수행할 때”로, “각호”를 “각 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1인을 청원 월례조회시”를 “1명을 청원 조회시”로, “12인이내”를 “12명 이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직속기관장, 실과 소장·읍면동장”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추천된 시상대상자에 대한”을 “추천된 시상대상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수장자에 대하여”를 “수장자에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를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상자에 대하여”를 “수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이내자”를 “배수이내의 사람에게”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를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년	월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 소 속			(18)직 위	
(19) 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자랑스런공무원상운영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u>자랑스런공무원상</u>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상대상) <u>자랑스런공무원상</u>은 시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한다.</p> <p>제3조(선발대상) <u>자랑스런공무원상</u>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워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원업무 등 위민봉사에 <u>기여한 자</u> 2.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주민소득증대와 특출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u>자</u> 	<p><u>남원시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운영 규정</u></p> <p>제1조(목적) ----- <u>자랑스러운 공무원상</u> ----- ----- -----.</p> <p>제2조(시상대상) <u>자랑스러운 공무원상</u>----- -----.</p> <p>제3조(선발대상) <u>자랑스러운 공무원상</u>은 공무를 수행할 때 ----- ----- ----- ----- <u>각 호</u>의 ----- -----<u>사람</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기여한 사람</u> 2. ----- ----- ----- <u>사람</u>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에 기여한 자

4.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헌신하
고 애함과 효행의 공적이 현
저한 자

5. 창의적으로 선진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특수시책, 창안사
업, 수범사례 추진 등 타 공무
원의 귀감이 되는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명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전시효과를 노린
자

2.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공적
내용을 과장·과시하는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빈축을 받고 있는 자

4. 시상일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거나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
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 시상은
매월 1인을 청원 월례조회시 시
행하고 시상인원은 연 12인이내
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3. -----
----- 기여한 사람

4. -----

-- 사람

5. -----

----- 사람

제4조(결격사유) --- 각 호-----
----- 사람은 -----
-----.

1. -----

사람

2. -----
-----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 -----
-- 1명을 청원 조회시 -----
----- 12명 이내
-----.

때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제6조(시장대상자 추천 등) 시장
대상자 추천은 각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서류 1부

제7조(수상자 선발) ① 추천된 시
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은 시
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심사반이 현지 실사를 실시
한다.

②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제출된 추천서류와 현지확인
실시결과를 근거로 공적심의회
원에서 심의 선발한다.

제8조(시장방법) 수장자에 대하여
는 상패(별표1)와 해외연수증서
(별표 2)를 교부한다.

제9조(수상자 특혜) 수상자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부동반 해외연

-----.

제6조(시장대상자 추천 등) ----
----- 직속기관장,
실과소장·읍면동장-----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7조(수상자 선발) ① 추천된 시
상대상자의 -----

--.

② ----- 제6조에 따라 ----

-----.

제8조(시장방법) 수장자에게----

-----.

제9조(수상자 특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

--.

1. 수상자에게-----

수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 선발

2.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 배수
이내자 우선 승진

제10조(해외연수비 지급의 중지
등) ①수상공무원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외연수비
지급을 중단한다.

1. 2. (생략)

3.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외연수비의 지
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할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외연
수비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2. ----- 배수
이내의 사람에게 --

제10조(해외연수비 지급의 중지
등) ①----- 각 호
--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으로-----

②---- 각 호-----

-----.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21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7-1 3	남원시 화정동 194-10(임)	김*상	2017-건축과- 신축신고-281	59.8	6	359	남원시 화정동 산 43-1	남원시 화정동 194-12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남원시 공고 제2018-141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 1. 24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조항 삭제 (안 제2조)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고용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신청 시기 조정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에 따른 개정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다. 입법예고 : 2018. 1. 26 ~ 2018. 2. 19. (24일간)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063-620-6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운영 조항 삭제 (안 제2조)
-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고용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신청 시기 조정 (안 제9조, 안 제10조)
-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에 따른 개정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 ~ 2017. 12.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이내”를 “이내에”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본문 중 “(공장설립승인일)로”를 “(공장설립승인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 2, 2-1, 3, 4, 5, 6, 7, 8, 9, 11, 12, 13, 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급 기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구분	국내기업·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기업
	개인·법인·단체	①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6% ②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7% ③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8% ④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9%(최고 1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지급 비율	공무원	[투자유치공무원] ① 성과포상금 :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1% ② 특별승진 :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인·허가 등 지원부서 공무원] ① 표창수여 및 시상품 : 원화기준 100억이상 ~ 300억원 미만 ② 표창수여 및 국외 선진지 시찰 :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투자유치 기여도 차등 평가 기준 및 적용율

- ① 투자자 발굴
- ② 기업투자(이전 및 신·증설) 정보 제공
- ③ 투자성사(MOU-MOA, MOU에 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가 된 경우)
- ④ 입지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⑤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⑥ 투자관련(공장설립 등) 민원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적용대상 기준별	적용율
① ~ ⑥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100%
① ~ ⑤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80%
① ~ ③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50%
① ~ ②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20%

3. 지급방법

- ① 포상금 신청 : 유치기업의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② 포상금 지급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 ③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 : 별도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추진
- ④ 특별승진 : 별도의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인사부서 통보 후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 추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지원대상자	지분참여비율(%)		
복 귀 유 형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부분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부분 철수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입주계약체결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 종(KSIC코드)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및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금 원	
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뒤쪽)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내 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신청보조금	관외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지원 []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존 부지 내 공장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신규 부지 내 공장 신·증설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지원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
	창업기업 []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 <input type="checkbox"/> 투자
소재지(변경 포함)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이전,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공장면적률(%)
이전, 신·증설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창업기업(현 공장 소재지)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건축착공일	업종 (KSIC코드)
공장등록일		준공예정일	()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총 투자금액 (A부지 + B설비)	원	설비투자금액 (B=C+D+E)	건축비·근로환경 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내기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제 출 자 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2.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재된 공문서 사본 1부 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 이체내역서 각 1부 5. 건축 배치도 및 층별 상세도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7. 준공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 투자확인 사진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광사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관광사업투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업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사무소	전화					팩스						
	영업소	E-mail.											
차고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임대												
차고지 주소													
자동차 등록구분	합계(A=B+C-D)			신규(B)			이전(C)			말소(D)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취득세 납부액	원												
	* 2011.1. 1 이전 등록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기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매도 내역													
매입(A)			매도(B)				차액(A-B)						
대수	매입액		대수	매도액			대수	매도차액					
대	원		대	원			대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본 1부
3. 지역개발채권 매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부
4. 차량별 매입·매도내역 1부(뒷면 별지 서식 작성)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여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 청 인 제 출 서 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 2.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1호 서식)
-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6. 고용보조금 신청인(고용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 7.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1부

답 당 자 확 인 사 항

- 1. 근로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6. 교육훈련자 명단 1부(별지 제5-1호 서식)
7. 교육훈련수료증(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8. 교육훈련비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이체내역서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육훈련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붙임서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 가. 제조업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남원시와 투자협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필지가 1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목록 작성요망)
(단, 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를 증명해야 함)
-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 3. 기반시설(진입도로, 주 출입구 변경, 도시가스, 전기, 오페수 시설) 관련 계약서 및 설비내역서 사본 1부
-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단,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로 대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2. 12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성명	국 적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외국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 된 사업			
투자방법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구 분	<input type="checkbox"/> 현금 [] <input type="checkbox"/> 자본재 [] <input type="checkbox"/> 산업재산권 등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사업개시 예정일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 <input type="checkbox"/> 투자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공장소재지				
상시고용예정인원			업 종(KSIC코드)	()
투자계획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m ²)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준공장면적률(%)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장등록일	

입지보조금 신청내역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			
설비투자금액(B=C+D+E)	원		
건축바·근로환경개선시설(C)	원		
시설장비 구입비 (D)	원		
기반시설 설치비(E)	원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USD 상당)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신청내역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 2. 12>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뒤쪽)

투자유치 참여 신청자 명단(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재)

참여2.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1과 동일할 경우는 기재 생략)	사진(3×4cm)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3.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cm)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4.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cm)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유치 참여 신청 관련 안내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기업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은 남원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기업 유치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이후 법인 및 단체의 신청인이 내부 변동사항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구 분	붙임서류
제출자료	<p>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p> <p>가.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3-1호, 제13-2호 서식)</p> <p>나.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p> <p>다.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p> <p>라.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p> <p>마.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p> <p>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p> <p>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p> <p>가. 유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p> <p>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p> <p>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p> <p>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p> <p>마.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p> <p>바.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p> <p>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아.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p> <p>자.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p> <p>차.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p>

투자유치 포상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운영) 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제2조(위원회 운영) <삭 제>
<p>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출석 요구시에는 조례 제11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삭 제>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p>	<삭 제>
<p>④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삭 제>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3. (생략)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내에

제9조(고용보조금) ① -----

1. -----
----- 10명 -----

2. 3. (현행과 같음)

② -----

----- 공장등록완료
일 또는 건축준공일-----

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생략)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생략)

② (생략)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상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⑤ (생략)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

1. -----
----- 10명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남원시 공고 제2018-142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 1. 24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 기준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안 제8조)

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조정 (안 제18조, 안 제19조)

- “20명” 을 → “10명” 으로 조정

다. 지원제외업종 분류코드 수정 (안 제29조)

- 유사 제품 제조업(2042)을 → 유사 제품 제조업(2041)으로 수정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 기준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안 제8조)

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조정 (안 제18조, 안 제19조)

- “20명”을 → “10명”으로 조정

다. 지원제외업종 분류코드 수정 (안 제29조)

- 유사 제품 제조업(2042)을 → 유사 제품 제조업(2041)으로 수정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 ~ 2017. 12.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9호 중 “전라북도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사실을 주민 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을 “주민등록상의 주민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위원장이 호선”을 “위원장이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제4조 제2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하여 전문적”을 “전문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

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 중 “(2042)”를 “(2041)”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율”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관내 거주자”란 <u>전라북도 남원시</u>에 거주하고 있는 <u>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u>을 말한다.</p> <p>10. ~ 21. (생략)</p> <p>22. “유치”란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3. · 2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u>주민등록상의 주민</u>----- -----.</p> <p>10. ~ 21. (현행과 같음)</p> <p>22. ----- <u>시</u>----- ----- ----- ----- -----.</p> <p>23. · 24.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p>1. (생략)</p> <p>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당연직)

2. 남원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4. (생략)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생략)

③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위원장이 지명

② -----

-----.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
----- 시 의
원

3. 4. (현행과 같음)

5. ----- 전문적 -----

6. (현행과 같음)

③ -----
-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

사항을 자문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신설>

- ② · ③ (생략)

<신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시장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8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10

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시의회의 협의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의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

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10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 4. (생략)

③·④ (생략)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2041)-----

3.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지원 -----

 -----.

 -----.

②·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8- 133호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상 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7조)
- 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2조)
- 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8조)
-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31), 팩스(063-620-6747)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063-620-69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1.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상 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7조)
- 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2조)
- 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8조)
-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 ~ 2018. .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 3) 성별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 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 통합

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

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확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

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3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중인 경우

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17조(교육의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장 및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제2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